KOSHA GUIDE

C - 94 - 2013

기 등으로 가열하면서 양생하는 경우 유해가스 및 산소결핍에 의한 중 독·질식 재해발생의 우려가 높으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.

(5) 밀폐된 공간의 경우 환기 후 필요 시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착용, 감 시인 배치,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여 질식예방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.

12. 거푸집 해체

- (1) 거푸집 해체는 설계도서의 거푸집 존치기간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압축강 도 시험결과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관리감독자는 거푸집 해체시기, 해체순서, 해체방법 등을 결정하고 근로 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- (3) 거푸집 해체 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거푸집 해체작업 순서는 조립의 역순으로 하여야 한다.
- (5) 해체작업에 사용되는 가시설물, 기계·기구 등은 작업 전에 이상유무를 점 검하여야 한다.
- (6) 양중기는 사용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.
- (7) 해체작업 장소 및 주변지역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 의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8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천 후시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 - (가) 풍속이 순간초속 10미터 이상인 경우
 - (나)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